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AR1102)

제정 2009. 3. 1
개정 2010.12. 9
개정 2012.12.18
개정 2015.12.24
개정 2016. 9.23
개정 2017. 9.14
개정 2018. 4.23
개정 2020. 1.15
개정 2021. 9. 3
개정 2021. 12.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명칭)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7조 및 동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라 하며, 영어 명칭은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영어 약칭은 “KSA”라고 한다)로 한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20. 1. 15., 2021. 12. 20.>

제3조(교육목표) 본교는 과학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창의적 글로벌 리더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훈은 창의(Creativity), 열정(Passion), 봉사(Service)로 한다.

제4조(교장)

- ① 교장은 KAIST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본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12.18>
- ② 교장은 과학기술 또는 과학영재교육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개정 2016.9.23., 2017. 9.14>
- ③ 교장후보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 ④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2.12.18.>
- ⑤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3.>

제5조(교감)

- ① 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감을 두며, 교감은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

- 한다. <신설 2012.12.18>
-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2.18>
- 제6조(학사조직)** ① 교장 밑에 다음과 같은 학사조직을 둔다. <개정 2012.12.18>
1. 수리정보과학부
 2. 물리지구과학부
 3. 화학생물학부
 4. 인문예술학부
- ② 제1항에 따른 학부는 과학영재교육의 기본단위로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및 연구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학부 등 학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7조(행정지원조직)** 학사조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장은 KAIST영재교육위원회(이하 “영재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16.9.23., 2021. 12. 20.>
- 제8조(위치)** 본교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개정 2012.12.18>

제 2 장 학사운영 일반 <개정 2012.12.18>

- 제9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제10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1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해 1학기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18>
- ② 학년은 학사력에 따라 2개 학기로 나눈다. <개정 2012.12.18>
- ③ 교장은 방학기간에 계절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2.12.18>
- ④ 제1항, 제2항의 개강일 및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교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18>
-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당 16주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②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1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2.18>
- 제12조(휴업)**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휴일
 2. 본교 개교기념일 (9월 7일)
 3. 여름 방학

4. 겨울 방학

5. 전 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태가 있을 때, 교장은 임시휴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 3 장 입학·등록·재입학·복학

제13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과학영재교육의 수요 전망에 따라 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② 본교의 매 학년도 입학정원은 제1항에 의거하여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4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국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16조(입학전형) 입학지원자격, 선정에 필요한 선정기준, 판별·심사 및 전형료 등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7조(입학허가) ① 교장은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제3호 서식 서약서 제출 등)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2.12.18>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교를 자퇴하거나 본교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 선심위의 심사를 거쳐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장이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지원자는 재입학원(제7호 서식)과 선심위가 정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0조(전·편입학) ① 다른 과학영재학교에서 본교 전·편입학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② 전·편입학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제21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2조(수강신청) ①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기에 수강

할 과목을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23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보증인의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 4 장 휴학 및 퇴학

제24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휴학원(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하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전학)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 할 때에는 전학원(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7조(제적) 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한다. <개정 2012.12.18>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이유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학사경고를 통산 2회 받은 자
5. 학생학사위원회에서 학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학생이라 인정된 자

제 5 장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개정 2012.12.18>

제2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②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 · 연구 활동, 리더십 활동으로 편성 · 운영한다.

③ 교과의 편성은 인문계열 교과와 자연계열 교과로 한다. 인문계열 교과는 국어, 사회, 외국어, 체육 · 예술로 하고, 자연계열 교과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정보과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융합과목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21. 12. 20.>

- ④ 교장은 신체장애 학생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⑤ <삭제 2012.12.18.>
- ⑥ <삭제 2012.12.18.>

제29조(학점)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 동안 1주 1시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한 시간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과목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제30조(학점인정) 학생은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 6 장 평 가 <개정 2012.12.18.>

- 제31조(성적평가)** ① 교과활동은 각 교과목별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교과과목의 평가는 아래 표와 같이 평점제로 한다.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 ③ 창의·연구 활동 및 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과목은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21. 12. 20.>
 - ④ 기타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32조(재수강)** ① 학생은 지도교사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② 재수강의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9, 2012.12.18.>
- 제33조(출석의무)** ①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유고결석 사유 및 사유별 결석허용 범위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 7 장 졸업 및 학교생활기록 <개정 2012.12.18.>

제34조(졸업학점) 졸업대상자는 교육과정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9.23.>

제35조(졸업) ① 교장은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제1호 서식(영문의 경우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34조의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기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수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료자는 기간 제한 없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학기말에 졸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③ 제9조의 수업연한 내에 제34조의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 요건, 수료, 졸업유예 등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36조(학교생활기록) 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소정서식과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12.12.18>

제 8 장 학생활동 <개정 2012.12.18>

제37조(학생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하고, 교과 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② 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권장·보호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18>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따라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교원의 지도에 따라야한다. <신설 2012.12.18>

제 9 장 포상 및 징계 <개정 2012.12.18>

제39조(포상)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는 학생학사위원회 심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3. 미행(선행·효행·봉사활동)이 있어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된 자

② 교장은 졸업 시 우등상(Cum Laude, Magna Cum Laude, Summa Cum Laude)을 수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40조(징계)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2.12.18>

1. 품행이 불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4. 기타 본교의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개정 2012.12.18>
- ②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 10장 교육활동의 비용 징수 <개정 2012.12.18.><개정 , 2021. 12. 20.>

제41조(징수금) ① 본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18., 2021. 12. 20.>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금의 종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③ 기타 학교의 제반 비용 및 징수 행위는 학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42조(장학금 지급 및 납부금 감면) <개정 2012.12.18>

① 학생에게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② 가정환경 및 기타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납부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제목개정 2021. 12. 20.]

제 11 장 생활관 <개정 2012.12.18>

제43조(생활관 운영) ① 본교에서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생활관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생활관입사원(제4호 서식)을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생활관 운영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규정을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 12 장 외국인 학생 <개정 2012.12.18>

제44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등) ① 본교는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입학전형,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생활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 13 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개정 2012.12.18>

제45조(학교발전기금 조성) ① 발전기금위원회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개정 2012.12.18>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거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개정 2012.12.18>

제46조(학교발전기금 운영) 발전기금은 발전기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 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5. 학생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활동의 지원
6.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 지원 <개정 2012.12.18>
7. 교직원 후생 복리 사업 <개정 2012.12.18>
8. 기타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12.18>

제 14 장 협의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2.12.18>

제47조(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장 또는 교장은 교육목표 달성의 관리 지원, 교원집단사과의 활성화 및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통한 창의적 학교경영이 가능하도록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48조(KAIST 영재교육위원회) ① 총장은 본교의 학칙 및 주요규정의 제·개정, 학교운영 계획 및 평가, 조직 및 정원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KAIST 영재교육위원회(이하 “영재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8>

② 영재교육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삭제 2012.12.18>

④ <삭제 2012.12.18>

제49조(KSA교원인사위원회) ①교장은 본교의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KSA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신설 2012.12.18., 개정 2018. 4. 23.>

②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 4. 23.>

1. 교원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 4. 23.>
-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4. 23.>
- ⑤ 기타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 4. 23.>
- 제50조**(KSA예산위원회) 교장은 본교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KSA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 제51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교장은 학생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52조**(교육과정위원회) 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53조**(학생학사위원회) 교장은 학생들의 휴학, 복학, 자퇴, 제적, 포상, 징계, 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학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54조**(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18., 2021. 12. 20.>
- [제목개정 2021. 12. 20.]
- 제55조**(인사자문위원회) 교장은 교직원의 인사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56조**(학교자문위원회) 교장은 학교운영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교자문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57조**(교무회의) ① 교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개정 2012.12.18>
- ② 교무회의는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교장이 된다. <신설 2012.12.18>
- ③ 교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신설 2012.12.18>
1. 학칙·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발의 <신설 2012.12.18>
 2. 수료 및 졸업 <신설 2012.12.18>
 3. 교육과정 <신설 2012.12.18>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2.18>
- ④ 교무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 15 장 인사 <개정 2012.12.18>

제58조(교원) ①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개정 2012.12.18>
2. 교사(과견교사를 포함한다.)
3. <삭제 2018. 4. 23.>

② 교원은 학생 6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한다. <신설 2012.12.18>

제59조(교원의 임용·연수) ① 교원의 임용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3규정에 따라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파견 받을 수 있다.

③ 교사는 KSA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무는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8>

④ <삭제 2108. 4. 23.>

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⑥ <삭제 2012.12.18>

제60조(교원의 보수·수당·계약기간·근무조건·평가) ① 본교 교원의 보수는 호봉제에 의한 급여와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② 교원의 호봉체계는 교육공무원의 호봉체계를 준용하여 KSA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④ 교원의 임용은 5년 이내의 계약제에 의하되, 초임 계약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4. 23.>

⑤ 교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8. 4. 23.>

⑥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⑦ 교원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⑧ <삭제 2018. 4. 23.>

⑨ <삭제 2012.12.18>

제61조(교원 인사) ① <삭제 2018. 4. 23.>

②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 4. 23.>

③ 교원의 재임용 계약 여부는 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성과를 참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 과

정에서 당해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4. 23.>

1. 교과지도 영역에 관한 사항
2. 생활지도 영역에 관한 사항
3. 전문성신장 영역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 영역에 관한 사항

④ 교원의 임용, 재임용, 포상, 징계 등에 관한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8. 4. 23.>

제62조(교원 정년) ①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 말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8. 4. 23.>

제62조의 2(강사의 임용 및 처우) ① 강사 및 시간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된 강사 및 시간강사의 보수, 수당,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평가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4. 23.]

제63조(직원의 임용 및 처우) ① 본교의 직원은 총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대한 사무는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8>

② 직원의 급여, 기타 인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18., 2018. 4. 23.>

제16장 사업계획 및 회계 <본장 신설 2015.12.24.>

제64조(경비재원) 본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 기부금,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신설 2015.12.24.>

제65조(사업연도) 본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신설 2015.12.24.>

제66조(사업계획서 등) ① 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14>

② 예산총칙으로서 교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67조(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은 당해 사업에 설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확정된다.

② 확정된 예산의 수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성을 인정하며 독립회계 체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68조(결산) ① 교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14>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 대 실적대 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 전면 신설 2015.12.24.]

제17장 책임 및 권한 <본장 신설 2015.12.24.>

제69조(책임) 교장은 소관사업별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에 의한 제 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제70조(권한의 위임) 총장은 부설기관 운영규정 제8조의 업무조정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금에 관한 사항
2. 자금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반적인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18장 기타 <본장 신설 2015.12.24.>

제71조(문서관리) 본교의 대외적인 협정, 협약 및 모든 문서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과 관련 되는 제반 문서 및 협약은 총장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15.12.24.>

제72조(인장관리) 교장은 본교 운영에 필요한 인장을 비치·사용·관리한다. <신설 2015.12.24.>

제73조(제규정의 적용) ① 본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부설 기관 운영 규정 및 각종 세부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관계 제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규정 또는 요령을 둘 수 있다.[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 19 장 학칙 개정 절차 및 시행세칙

<제16장에서 제19장으로 이동 2015.12.24.>

제74조(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8.> <제64조에서 제74조로 이동 2015.12.24.>

제7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65조에서 제75조로 이동 2015.12.24.>

부 칙 <2009.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한국과학영재학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이전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과학고등학교 포함) 졸업생의 학적은 본교에서 관리한다.

부 칙 <2010.12.9>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폐지) KAIST 영재교육인사위원회 규정 및 KAIST 영재교육예산위원회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제16장 사업계획 및 회계”, “제17장 책임 및 권한”, “제18장 기타”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9.23.>

이 학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2018. 4. 23.>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관 제31조의3”을 “정관 제47조”로 한다.

부 칙 <2021. 9.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에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 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⑤생략

부 칙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호 서식) 졸업장

제 호

졸업장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을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

학교장
직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 ○ ○

기관장
직인

(제2호 서식) 영문 졸업장
<개정 2012.12.18>

No

DIPLOMA OF GRADUATION

This Diploma of Graduation is hereby granted to

HONG, GIL-DONG

**for completing the course requirements
of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Given on the thirteenth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three.

○○○

Principal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

President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서 약 서

학 번 :
성 명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는 본인은

1. 학업에만 정진할 것이며,
2. 교내·외 생활에서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것이며,
3. 항상 선생님을 존경하고, 웃어른께 겸손할 것이며,
4. 시간·물품·건강 관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5. 의·약·학계열 등 이공계열 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6. 기타 학교가 정한 제반 규칙을 엄수할 것은 물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귀하

생 활 관 입 사 원 서

학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생활관 생활에서 모든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학교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하며 생활관 입사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귀하

휴(복) 학 원 서

학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복)학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휴(복)학원을 제출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휴학기간 만료 후 1주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1. 사 유 :
2. 기 간 :
3. 연 락 처
주 소 :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담임(담당)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귀하

자 퇴 원 서

학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학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유 :

2. 연 락 처

주 소 :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담 임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귀하

재 입 학 원 서

학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재입학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 학 시 기 :
2. 제 적(자퇴) 시 기 :
3. 제 적(자퇴) 사 유 :
4. 재입학 희망 사유 :
5. 재입학 희망 시기 :
6. 연 락 처
주 소 :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귀하

전 학 원 서

학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전학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전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유:
2. 전 학 학 교 :
3. 전학 희망 시기 :
4. 연 락 처
주 소 :
전 화 번 호 :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담 임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귀하